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활용하여야”를 “재활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품별”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p>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p>	<p>가.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p>	<p>사용억제</p>
---	--	-------------

	사.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사용억제

	<p>다.</p> <p>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p> <p>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p> <p>나. 1회용 우산 비닐</p>	
	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p>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p> <p>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p> <p>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p>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슈퍼마켓”을 “종합 소매업”으로, “할인하여”를 “할인해”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알기 쉽게 하여야”를 “알기 쉽게 해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13조 관련)”을 “(제13조의2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기타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의 회수
 - 나. 압축, 파쇄 등 가공을 통한 재생원료의 제조
 -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u>재활용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p> <p>1. 전자제품: 「<u>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4조에 따른 <u>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u></p> <p>2. 3. (생략)</p>	<p>제8조(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재활용해야</u> ----- ----- ----- ----- -----</p> <p>1. ----- 「<u>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5조에 따른 <u>제품군별</u> ----- -----</p> <p>2. 3. (현행과 같음)</p>